

#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

## (박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12
----------	-------

제출년월일 : 2024. 2. 22.  
발의자 : 박태순 의원 등 9명

### 1. 제안이유

-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및 통행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안 제5조)
- 물고임 방지 계획수립 (안 제6조)
- 현황자료 작성 · 관리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7. 조례안 예고결과 : 붙임 5

- 조례안 예고 : 2024. 2. 15. ~ 2024. 2. 20.

## 【붙임1】 제정조례안

###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3. "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를 말한다.
4. "물고임"이란 우수 등의 물이 도로의 지표 및 지하에 설치된 우수배제시설을 통해 하천 등으로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이하 "물고임"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우수 배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물고임 발생 현장을 목격할 시 신속히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2.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 배제 강화 방안

3. 물고임 발생 현장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4.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우수배제시설의 설치 기준” 수립 시 관내 도로 여건과 물고임 다수 발생 특정지역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도로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규정 대비 강화된 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다.

③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발생시키는 우수배제시설은 횡단보도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고임 방지 계획수립)** ① 시장은 관리대상 도로의 물고임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과 추진성과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과 추진성과 작성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우수 배제와 관련된 부서의 장은 자료 작성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과 추진성과를 매년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자료 작성·관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전산자료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의 주관부서는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
2. 현장조사는 일제조사 방식으로 여름 강우 시, 겨울 강설 직후 등에 실시할 것
3. 현장조사는 필요에 따라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유동인구 집중지역, 어린이 및 노인시설 주변,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철도역사 출입시설 주변, 민원발생지역 등 대상지역이나 주제를 정하여 실시할 것
4.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고임 확인시 즉시 유지보수하도록 할 것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의 “주민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대장을 전산의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 물고임 발생지역의 신속한 조치와 반복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고임 확인시 즉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박태순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6)

#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412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11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 수정이유

- 자치법규 제명의 결정 원칙에 맞게 조례 제명을 명확히 조정하고, 조문에 이와 관련된 자구를 일괄 정비하도록 함.
- 상임위 보고에 관한 사항 및 입법 경제성을 고려해 중복되는 부분 등을 삭제하고, 업무 현실에 맞도록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를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로 수정 (안 제1조, 안 제3조)
- 조례의 취지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수정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횡단보도”, “도로”를 각각 “횡단보도 및 정류소”로 수정하고,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우수 배제와”를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과”로 수정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상임위 보고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6조제3항)
- 다음 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업무 현실에 맞도록 조정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안 제7조제2항)

#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를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정류소를 말한다” 를 “정류소로써 주변의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고임” 이란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안 제3조 중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를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횡단보도” 를 “횡단보도 및 정류소” 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도로의” 를 “횡단보도 및 정류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우수 배제와” 를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현장조사는 민원발생 정도와 보행자 등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해 유동 인구가 많아 주민불편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물고임 중점관리구간을 정하여 실시할 것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u>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u>	<u>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횡단보도 및 정류소의</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원안과 같음) 3. ----- ----- <u>정류소로써 주변의 도로구역을 포함한다.</u>
4. “물고임”이란 우수 등의 물이 도로의 지표 및 지하에 설치된 우수 배제시설을 통해 하천 등으로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물고임”이란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횡단보도 및</u>	제3조(시장의 책무) ----- ----- <u>횡단보도 및</u>

정류소 등의 물고임(이하 “물고임”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① · ② (생 략)

③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발생시키는 우수배제 시설은 횡단보도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고임 방지 계획수립) ① 시장은 관리대상 도로의 물고임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과 추진성과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과 추진성과 작성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우수 배제와 관련된 부서의 장은 자료 작성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과 추진성과를 매년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자료 작성 · 관리) ① (생 략)

② 현장조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현장조사는 일제조사 방식으로

정류소의-----  
-----  
-----  
-----.

제5조(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횡단보도 및 정류소 -----.

제6조(물고임 방지 계획수립) ① -----  
----- 횡단보도 및 정류소 -----  
-----  
-----.

② -----  
-----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과 -----  
-----  
-----.

<삭 제>

제7조(현황자료 작성 · 관리) ① (원안과 같음)

② -----  
-----.

1. (원안과 같음)

2. 현장조사는 민원발생 정도와

여름 강우 시, 겨울 강설 직후  
등에 실시할 것

3. 현장조사는 필요에 따라 횡단  
보도 및 교차로 주변, 유동인구  
집중지역, 어린이 및 노인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 택시승차대  
· 철도역사 출입시설 주변, 민원  
발생지역 등 대상지역이나 주제를  
정하여 실시할 것

4.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고임 확인  
시 즉시 유지보수하도록 할 것  
③ · ④ (생 략)

보행자 등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  
해 유동인구가 많아 주민불편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물고임 중  
점관리구간을 정하여 실시할 것

<삭 제>

<삭 제>

③ · ④ (원안과 같음)